

1.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학교보건법의 강화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지역사회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넓혀 준다거나 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보건교육에 활성을 기한다.
3. 대학 교과과정에서 보건학에 대한 이수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

양호교사 분포양상과 관련요인 분석

보건학논집 제36권, 1984.

김 화 중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에 대한 개괄적 조망의 기초위에서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 되는 양호교사의 배치양상을 파악·정리함과 동시에 이의 분석을 통하여 배치양상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찾아봄으로써 앞으로 학교보건의 발전을 위한 참고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학교보건의 개괄은 양호교사에 관한 분석이 학교보건이라는 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로 교육사, 교육년감, 교육통계년보, 업무편람, 법령집 등의 문헌자료와 일부 면담 수집자료를 이용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는 19세기 말의 근대학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1950년대의 전후복구 과정에서부터 새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셈이다.

②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을 위한 법제는 1949년의 교육법에서부터 비롯되지만, 1967년의 『학교보건법』과 1969년의 동 시행령의 제정·공포는 법칙상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③ 학교보건 행정을 담당할 기구로서 1979년을 전후하여 문교부에는 학교보건과가 설치되고 시도교육위원회의 체육보건계가 보건계와 체육계로 분리된 것은 행정상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1982년에 체육부가 설치되면서 중앙행정기구의 학교보건에 관한 직제는 위축과 혼란이 있는 바 조속히 문교부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 1950년대의 문교부 장학방침에는 학교보건에 관한 내용이 보였으나 1960년대에는 없어졌으며 1972년에 다시 나타난 이후로 계속되었다가 1980년부터 없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지침도 대체로 같은 추세를 보였다.

⑤ 학교보건의 주요업무를 대별하면 보건교육, 신체검사, 병리검사, 급수관리 및

환경위생, 학교급식, 응급처치 등을 위한 양호실운영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예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단순한 업무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으나 업무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이 점차 다양하게 발전해오고 있다.

⑥ 법제상의 학교보건인력으로는 학교장, 체육(주임) 교사, 학급담임 교사의 교원과 학교의, 학교약사, 양호교사, 영양사의 보건관계 전문인력이 있다. 학교보건관계 법령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학교에 상근하는 보건전문인력을 간호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교사의 지위를 인정하여 양호교사에게 학교보건의 기본인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교부규칙은 학교보건 계획의 수립과 보건인력 및 업무의 총제조정기능을 체육(주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인력운용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⑦ 양호교사가 법제화된 것은 1953년이지만 임용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교사가 아닌 고용직이었다.

현행의 기준을 보면 간호학과졸업 또는 전문대학 간호과졸업(교직과목이수)의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라야 양호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양호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사이에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미만의 무의촌 국민학교에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학급수에 불구하고 각급(초·중·고) 학교에 1인을 “둔다”고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기준을 정해서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양호교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 포괄적인 역할모형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학교보건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의 기능이 체육(주임) 교사에게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학교보건의 핵심인력이 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업무집행이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도에 선행하여 학교간호원(양호교사)들이 바람직한 역할의 실례를 스스로 쌓아가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양호교사의 배치양상을 파악·정리해 보기 위해서 1964년부터 1982년까지의 교육통계연보에서 학교의 상황변수와 양호교사변수에 대한 정보를 취집하고 양호교사 특성별, 년도별, 초·중·고별,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양호교사 배치양상을 학교상황변수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⑧ 1982년까지 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자수는 28,273명이며 양호교사로 임용된 수는 2,034명으로 자격증 취득자수의 7.2% 이었으며, 임용된 양호교사의 퇴직율은 5.7% 이었다.

⑨ 양호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연차적으로 보면 1964년에 20대 이하의 연령군이 81.8% 이었다가 1982년에는 59.4% 로 줄었고, 학력별 분포는 1964년에 고등학교졸업이하가 85.3% 이던 것이 1982년에는 전문대학이상인 84.5% 이었다. 경력분포는 1964년에 5년이내의 경력군이 83.3% 이었으나 1982년에는 52.8% 로 줄었다.

⑩ 양호교사의 수는 1965년의 833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3년 4월 현재 2,329명이다.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는 1965년에 8.7학교가 1982년에는 5.0학교이며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66년에 7,709명에서 1982년에는 4,912명,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는 1966년의 120.4학급이 1982년에는 91학급, 양호교사 1인당 교원수는 1966년에 134명이며 1982년에는 120명이었다.

⑪ 우리나라 국민학교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는 1964년에 9.5학교가 1982년에는 4.5학교이며,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64년에 8,038명이 1982년에 3,803명이었다.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는 1964년에 121.4학급, 1982년은 77.9학급이며 양호교사 1인당 교사수는 1964년 128.3명, 1982년은 86.7명이었다.

⑫ 우리나라 중학교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는 1964년에 35.3학교이었고 1982년에는 7.0학교이었다.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64년에 20,200명이 1982년에 8,265명이었으며,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는 1964년에 336.8학급, 1982년은 129.9학급이며, 양호교사 1인당 교원수는 1964년에 525.4명, 1982년 191.0명이었다.

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는 1965년에 8.1 학교, 1982년에 5.5 학교이었으며,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65년에 5,292명, 1982년에 7,222명이었다.

양호교사 1인당 학급수는 1965년에 88.5학급, 1982년에 122.0학급이었고, 양호교사 1인당 교원수는 1965년에 164.5명, 1982년에 216.2명이었다.

⑭ 1964년에는 뚜렷하던 각급학교(초·중·고)별 양호교사 배치양상의 차이는 1982년도가 지날수록 줄어들어서 1982년에는 별차이가 없었다.

⑮ 시도교육위원회별 양호교사의 배치양상을 대비해 볼 때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8학급이상 학교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양호교사의 배치양상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우선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한 조치가 있었을 때의 배치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국민학교 양호교사 1인당 학교수의 1964년부터 1982년까지의 변화속에서, 학교보건법과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던 1967년과 1969년, 학교보건에 관한 내용이 문교부의 정책에 표방되기 시작한 1972년 및 학교보건과가 문교부에 설치되었던 1979년 직후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가를 보고 그 영향을 유추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1982년말의 전국 10,729개 학교의 학교 상황변수에 대한 정보와 양호교사 배치양상을 파악하여 학교상황 변수와 양호교사 배치양상과의 관련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⑯ 1967년 및 1969년의 전후에는 양호교사의 배치양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1972년과 1979년에는 추세의 변동이 뚜렷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양호교사배치에 관하여 강제수단이 없이 지표만 제시한 법령은 지표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지표를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유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⑰ 학교상황변수중 각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위원회(C.C.E : 0.46), 학생수(C.C.E : 0.52), 학급수(C.C.E : 0.53), 교사수(C.C.E : 0.50), 학교가

위치한 지역(C. C. E : 0.43) 변수와 양호교사 배치와는 상관이 있으며, 학교의 초·중·고(C. C. E : 0.09), 설립년도(C. C. E : 0.24), 학교의 종별(남·여·사립, C. C. E : 0.23)는 양호교사 배치와 상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변수간의 상관은 아주 높았다.

양호교사의 근무동태 분석(1966~1983)

최신의학 제27권 제2호, 1984.

박연우·윤순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양호교사의 인적 특성과 근무동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교사와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는 1966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9월에 발간한 「문교통계연보」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양호교사의 연도별 분포는, 전체학교수에 대한 충원율로서 1966년에 11.5%, 1975년에 11.6%, 1983년에 21.5%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하였다.

2. 학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양호교사 중에서 양호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의 분포는 1966년에 85.0%, 1975년에 98.2%, 1983년에 99.0%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무자격자가 0.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교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1970년에 1명이 있었으며 정교사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1970년에 2.6% (22명), 1983년에 0.5% (10명)를 차지하였다.

3. 양호교사의 연령 분포는 해마다 20대가 가장 많았다. 1966년에 73.7%, 1975년에 52.7%, 1983년에 55.2%로 나타났다. 또한 30대는 1983년에 29.3%, 60대 이상은 1983년에 0.8%였다. 이에 비하여 일반교사는 해마다 30대가 가장 많았다. 1966년에 44.9%에서, 1975년에 36.8%, 1983년에 31.3%이었다. 또한 40대가 1983년에 25.2%, 60대 이상은 1983년에 2.0%였다. 따라서 양호교사의 연령층이 일반교사의 연령층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4. 양호교사의 학력 분포는 1966년에 고졸출신이 가장 많아서 70.6%였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1975년에 33.7%, 1983년에 12.7%이었다. 간호전문학교나 간호전문대학 출신 이상은 1966년에 24.2%에서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여 1975년에 64.0%, 1983년에 86.3%를 차지하였다. 중졸이하의 학력자는 1983년에 1.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일반교사는 1966년에 고졸출신이 47.6%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3년에 16.4%이